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차 관세법 기출문제 총평

안준호 관세사

올해 출제된 관세법 문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관세법 문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이어 단답형(열거 내용 기술)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주로 출제되었습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여 기술하는 문제가 주로(73%)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가지를 쓰시오”라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자주 출제되지 않은 범위에서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운송’에서 20점 분량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세율 및 품목 분류’에서 30점 분량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출제되었던 ‘조사와 처분’, ‘보칙’ 및 위원회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 자체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관세법 시험에서 사례형 문제도 출제할 것이라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번째, 환급특례법에서 20점 분량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점 분량으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관세환급특례법 문제를 20점 분량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시행규칙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긴 했으나, 문제 자체는 지엽적이거나 생소한 부분은 아니었고, 주로 열거된 내용을 기술하는 문제와 규정을 설명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어 수험생의 체감상으로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형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개별환급 신청에 대한 규정만 기술하면 대부분의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실제 점수는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난이도: 중하

*** 관세법 2022년 ~ 2026년 기출문제 분석**

구분 \ 출제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점수	비중 (%)
총칙	-	-	-	20	-	20	4%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10	-	-	-	-	10	2%
세율 및 품목 분류	-	-	30	-	30	60	12%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30	20	10	-	-	60	12%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30	-	-	-	30	6%
운송수단	-	-	-	-	-	-	0%
보세구역	6	-	30	10	-	46	9%
운송	-	-	-	-	20	20	4%
통관	-	-	-	20	28	48	1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	-	-	-	-	0%
벌칙	14	-	10	-	2	26	5%
조사와 처분	30	30	-	-	-	60	12%
보칙	-	10	10	30	-	50	10%
환급특례법	10	10	10	20	20	70	14%
합계	100	100	100	100	100	500	100%

*** 관세법 2026년 기출 유형 분석**

유형	점수	비율
열거 내용 기술	73점	73%
사례형	15점	15%
규정 설명	12점	12%

유형	관세법	관세환급특례법
법률	44점(56%)	14점(70%)
시행령	18점(22%)	1점(5%)
시행규칙	18점(22%)	5점(15%)
합계	80점	20점

【문제 1】 관세법령상 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수입자 A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련 신청서와 물품의 견본, 설명자료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신청이 반려되었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1)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적용 세율을 각각 쓰고, (2)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쓰시오. (11점)

물음 3) 간이세율의 적용 물품과 비적용 물품을 각각 쓰시오. (9점)

물음 1) 수입자 A는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관련 신청서와 물품의 견본, 설명자료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신청이 반려되었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설명하시오. (10점)

- ①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 ③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 ④ 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⑤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해당 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물품의 특성상 그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을 하기 곤란한 경우
- ⑥ 물리적·화학적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⑦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⑧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⑨ 신청인이 동일한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 ⑩ 그 밖에 ⑤부터 ⑨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물음 2) (1)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적용 세율을 각각 쓰고, (2)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쓰시오. (11점)

1.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적용 세율(3점) - 법 제69조 본문 및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1) 조정관세의 적용 세율(1.5점) - 법 제69조 본문

조정관세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할당관세의 적용 세율(1.5점) - 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① 세율의 인하(0.5점) - 법 제71조 제1항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세율의 인상(1점) - 법 제71조 제2항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8점) - 법 제69조 각 호 등

(1)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4점) - 법 제69조 각 호

- 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할당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4점) -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① 세율의 인하(3점) - 법 제71조 제1항

- ㉠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세율의 인상(1점) - 법 제71조 제2항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음 3) 간이세율의 적용 물품과 비적용 물품을 각각 쓰시오. (9점)**1. 간이세율의 적용 물품(3점) - 법 제81조 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①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② 우편물. 다만, 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 ③ 탁송품 또는 별송품

2. 간이세율의 비적용 물품(6점) - 영 제96조 제2항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 ② 수출용 원재료
- ③ 관세법 제11장의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 ④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
- 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 ㉡ 고가품
 - ㉢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 관세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한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 ⑥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대상 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해 물품 끝.

【문제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령(이하 '관세환급특례법령'이라 함)과 관련된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중소기업 B사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을 계속 받아 왔으나 최근 세관의 안내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품목분류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후 세관은 이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액 및 가산금액을 징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현재 B사는 수출용원재료 전량을 국내 공급업체들로부터 내국신용장 거래를 통해 구매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물음 1) 위 사례에서 B사가 관세환급(개별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관세환급특례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자를 쓰시오. (5점)

물음 1) 위 사례에서 B사가 관세환급(개별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관세환급특례법령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15점)

1. 비적용승인의 절차 생략(점수 없음, 참고용) - 관세환급특례법 고시 제31조 제4항

B사는 기존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사례에서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계기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한 것이기 때문에, 비적용 승인 절차 없이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납부세액 증명 서류의 구비(4점) - 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제1항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관세환급특례법 제5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B사가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수입 후 국내에서 제조·가공된 경우)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 후 국내에서 제조·가공되지 아니한 경우)를 공급받아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요량의 계산(3점) - 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를 준용하여, B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4. 수출이행기간의 확인(4점) - 관세환급특례법 제9조 및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하며,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는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1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사는 수출용원재료 전량을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내국신용장 거래를 통해 구매하기 때문에,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수출이행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가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지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수출이행기간에 수출을 이행한 건에 대해서만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5. 환급신청 가능 기간 확인(3점) -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①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 ②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 ③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

B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징수받은 건에 대해서는 징수 사유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관할 세관)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수출등에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관할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수출등의 이행 완료(1점)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①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
- ②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등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B사는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출물품의 수출등의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물음 2)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자를 쓰시오. (5점) - 관세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①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상의 발급 금액을 포함하며,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받은 환급실적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 ②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해당 환급신청일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금액과 환급을 신청한 금액을 포함하며, 관세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수출물품을 대상으로 환급을 신청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8억원 이하일 것 끝.

【문제 3】 관세법령상 원산지의 확인 등과 통관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1)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결정기준을 쓰고, (2)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 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작업 6가지를 쓰고, (3)수출입 금지품목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에 대하여 각각 쓰시오. (15점)

물음 2) (1)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과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2)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대상 물품 5가지를 쓰시오. (15점)

물음 1) (1)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결정기준을 쓰고, (2)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 작업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작업 6가지를 쓰고, (3)수출입 금지품목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에 대하여 각각 쓰시오. (15점)

1.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4점) – 법 제229조 제1항 등

관세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세법 제233조제3항의 확인요청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때에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세번변경기준(2점) – 규칙 제74조 제2항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2) 주요공정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2점) – 규칙 제74조 제3항

관세청장은 상기 (1)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불인정 공정(6점) – 규칙 제74조 제4항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이 수행된 국가는 실질적 변경기준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① 운송 또는 보세구역 장치 중에 있는 물품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 ② 판매를 위한 물품의 포장개선 또는 상표표시 등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
- ③ 단순한 선별·구분·절단 또는 세척작업
- ④ 재포장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
- ⑤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
- ⑥ 가축의 도축작업

3. 수출입 금지품목 등(5점) – 법 제234조 및 제269조 제1항

(1) 수출입 금지품목(3점) – 법 제234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금지품 수출입죄(2점) – 법 제269조 제1항

상기 (1)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음 2) (1)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과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2)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대상 물품 5가지를 쓰시오. (15점)

1.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6점) – 법 제230조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①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 ②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 ③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4점) – 법 제230조의2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대상 물품(5점) – 영 제236조 제2항

- ①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 ②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③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 ④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 ⑤ 기타 관세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문제 4】 관세법령상 보세운송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1)보세운송의 신고인을 모두 쓰고, (2)간이 보세운송에서 세관장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조치와 그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을 각각 쓰고, (3)보세운송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쓰시오. (10점)

물음 2) (1)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관세 징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2)조난물품이 운송될 수 있는 장소를 6개지만 쓰고, (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쓰시오. (10점)

물음 1) (1)보세운송의 신고인을 모두 쓰고, (2)간이 보세운송에서 세관장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조치와 그 조치를 위한 고려사항을 각각 쓰고, (3)보세운송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쓰시오. (10점)

1. 보세운송의 신고인(3점) - 법 제214조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① 화주
- ② 관세사등
- ③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보세운송업자)

2. 간이 보세운송에서 세관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4점) - 법 제220조

(1) 세관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3점) - 법 제220조 각 호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업자나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보세운송 신고절차의 간소화
- ② 보세운송을 하려는 물품의 검사 생략
- ③ 담보 제공의 면제

(2) 세관장의 고려사항(1점) - 법 제220조 본문

세관장은 보세운송을 하려는 ① 물품의 성질과 형태, ② 보세운송업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한다.

3. 보세운송 기간 연장승인신청서 기재사항(3점) - 영 제227조

- ①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연월일과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②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 ③ 연장신청기간 및 신청사유

물음 2) (1)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관세 징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2)조난물품이 운송될 수 있는 장소를 6가지만 쓰고, (3)국제항 안에서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에서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쓰시오. (10점)

1. 보세운송기간 경과 시의 관세 징수(2점) - 법 제217조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난물품 운송 장소(6점) - 법 제219조 제1항 및 제213조 제1항

- ① 국제항
- ② 보세구역
- ③ 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허가된 장소
- ④ 세관관서
- ⑤ 통관역
- ⑥ 통관장
- ⑦ 통관우체국

3. 환적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2점) - 규칙 제73조의3 제2항

- ① 환적컨테이너
- ② 관세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끝.

이하야백